

# 우리나라의 화재보험 요율제도



김 영 옥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부장)

## 개정된 화재보험요율서의 주요골자

지난 9월 15일자로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요율서가 개정시행되었는 바 개정주요 사유는 산업발달과 신소재의 개발, 표준 산업분류의 재편성, 건축시공방법의 다양화, 도시구성상태의 변화 및 행정구역 변경 등 제반여건의 변동에 따라 현행 요율체계의 전반적인 수정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요율적용상 과거 문제시되었던 일부 규정의 시정 및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이같은 화재보험요율서의 개정효과로서는 현행 요율서의 적용상 제반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규정의 합리화 및 위험의 적용분류를 기하였고 건물규정의 완화로 요율인하요인을 일부 흡수함으로써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화재보험요율은 부분적으로는 수차례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이번과 같이 화재보험요율 체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통칙 및 건물규정 등이 개정되기는 10여년만의 일이다.

금번 개정된 화재보험요율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요율서에 규정상 미비점으로 남아 있었고 계약자의 역선택 가능성 방지적 측면에서 보험기간중에 기계약기간을 만기일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의 추정보험료 산출은 단기요율에 의하도록 하였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선의의 계약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규정의 주요 개정요지를 살펴보면 급수관정 등 적용규정의 근간이 되는 건물관련용어를 지정하여 각 적용규정의 이해를 돕고 각 구조등의 불필요한 나열로

규정이 복잡하여지는 것을 방지하였고 불연재료, 내화구조, 방화벽은 수정보완하고 불연재료의 지붕은 폐지, 콘크리트조, 조적조, 내화피복, 내력벽, 비내력벽은 신설하였는 바 건물규정상의 주요 용어상의 개정요지는 표1과 같다.

표 1. 건물규정 용어의 변경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불연재료             | ○ 돌, 도자기, 인조석은 삭제<br>○ 블록, 회반죽은 추가                             | • 불합리점 보완                              |
| 내화구조             | ○ 외벽은 삭제<br>○ 보는 추가, 계단은 별도항으로 구분<br>○ 단독주택은 계단구조 배제           | • 불합리점 보완<br>• 규정의 명확화                 |
| 방 화 벽            | ○ 방화구획으로 용어수정<br>○ 현실성에 맞게 두께규정 및 방화문 설치조건 보완<br>○ 방화벽의 돌출부 보완 | • 건축법규 현실성에 맞게보완                       |
| 불연재료의 지붕         | ○ 지붕에 대하여 급수관정 요건에 별도로 지정하므로 폐지                                |  |
| 콘크리트조 조 적 조 내화피복 | ○ 신공법등 건물구조 추가<br>○ 내화피복에 관한 용어규정                              | • 신공법(PC, PS등), 피복재료를 신설하여 적용규정 미비점 보완 |
| 내 력 벽 비내력벽       | ○ 급수, 방화구획 규정에서 벽의 요건중 상부하중의 유·무에 따라 내화도의 차이가 인정되므로 이를 구분함.    | • 위험의 합리적 분류                           |

급수적용건물을 일반형태건물, 유리벽 비적용 건물, 내장재비적용건물, 무벽건물, 건축중인 건물의 5종으

로 분류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표 2와 같으며 건물 구조 급별 및 급별 외벽기준 변경 대비표는 각각 표 3 과 표 4와 같다.

표 2. 급수적용 건물분류

| 구분              | 내용   | 비고   |
|-----------------|--|--|
| 일반형태 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부재별로 급수판정 요건을 지정하여 불분명한 내용을 배제</li> <li>○ 벽두께 차등 유지</li> <li>○ 보, 지붕틀 추가</li> <li>○ 구조분류를 단순화</li> <li>○ 외벽의 개구부 및 돌출부의 불연성 요구폐지</li> <li>○ 완화조항도입(일부열급부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규정의 명확화</li> <li>• 위험분류의 적정화</li> <li>• 현실성에 맞게 보완</li> <li>• 효율적용규정의 경직성 해소</li> </ul> |
| 유리벽 (금속판) 비적용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판 추가</li> <li>○ 다면체 건물적용의 모순점 해소</li> <li>○ 특수형태 건물 적용가능토록 보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의 적정분류</li> <li>• 현실성에 맞게 보완</li> </ul>   |
| 내장재비 적용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불분명한 내용 수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규정의 명확화</li> </ul>  |
| 무벽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물건중 허간을 수정</li> <li>○ 적용한계치 설정등 규정의 불분명한 부분해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규정의 명확화</li> </ul>  |
| 건축중인 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중증의 급수적용부분 수정</li> <li>○ 용어정의 신설</li> <li>○ 규정의 불분명한 부분 해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규정의 명확화</li> <li>• 위험의 적정분류</li> </ul>  |

표 3. 건물구조급별 변경대비표

| 구분 | 현행   |      |      |    | 개정   |      |      |    |
|----|------|------|------|----|------|------|------|----|
|    | 1급   | 2급   | 3급   | 4급 | 1급   | 2급   | 3급   | 4급 |
| 기둥 | 내화구조 |      |      |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
| 보  | 내화구조 |      |      |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
| 바닥 | 내화구조 |      |      |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    |
| 계단 | 내화구조 |      |      |    | 내화구조 |      |      |    |
| 지붕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불연재료 |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불연재료 |    |
| 외벽 |      |      |      |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불연재료 |    |

표 4. 급별 외벽기준 변경대비표

| 구분 | 현행   | 개정  |
|----|--|---|
| 1급 | (1)철골철근, 철골, 철근콘크리트조-12cm이상<br>(2)철근콘크리트 블록조 | (1)콘크리트조<br>(가)내력벽-12cm이상<br>(나)비내력벽-10cm이상 |

|    |   |   |
|----|---|---|
|    | -20cm이상<br>(3)벽돌조, 석조, 무근콘크리트조-30cm이상   | (2)조적조<br>(가)내력벽-30cm이상<br>(나)비내력벽-20cm이상   |
| 2급 | (1)철골철근, 철골, 철근콘크리트조-12cm이상<br>(2)철근콘크리트 블록조-15cm이상<br>(3)벽돌조, 석조, 무근콘크리트조-20cm이상                             | (1)콘크리트조<br>(가)내력벽-10cm이상<br>(나)비내력벽-7cm이상<br>(2)조적조<br>(가)내력벽-20cm이상<br>(나)비내력벽-15cm이상 |
| 3급 | (1)철골금속판, 철골석면판, 철골유리, 벽돌붙임조<br>(2)콘크리트, 벽돌, 블록, 조립식 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조<br>(3)흙벽조-흙바름 두께 3.5cm이상<br>(4)2 급구조 건물 미달 | (1)불연재료<br>(2)흙벽조-흙바름 두께 3.5cm이상<br>(3)2 급구조 외벽 미달                                      |
| 4급 | (1)3 급구조 및 조건에 미달   | 과 동   |

한편 「하나의 건물」규정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용의 원칙, 보험인수, 보험금액산정 단위의 건물 기준으로 이의 분명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효율적용의 관행, 위험의 적정분류의 검토, 복합구조건물의 신설 등으로 현행 수개의 조항을 통합하였고 「건물의 분실」, 「구조급수가 다른 건물」, 「방화벽을 가지는 건물」, 「건물의 분실, 수용동산」, 「건물의 일부제외」 등을 폐지하였고, 과거 한 건물에 있어서 서로 다른 건물의 구조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열급구조의 바닥면적이 우급 구조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때 현행요율은 이들 상호간에 방화구획이 안된 경우 건물전체에 최열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위험의 양적인 면이 배제되어 효율적용규정이 경직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최열급부분의 건물구조 바닥면적이 연면적의 30%이하인 경우로서 열급부분의 바닥면적의 대소 및 우급열급의 급수 상태에 따라 최열급 기준요율을 5%~30%까지 차등할인하여 효율적용규정의 경직성을 해소하였고 열급부분의 바닥면적이 5%이하인 경우로서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을 때에는 효율을 분리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손해보험요율 산정회에서는 이번 화재보험요율개정을 계기로 국내 화재보험사에서 처음으로 건물규정해설서를 발간하여 보험사업자나 보험 계약자에게 건물규정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